

**2024년도 우체국쇼핑
특산물 신규상품 2차 모집 안내**

2024. 6.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실**

목 차

I. 목적 및 현황	1
II. 모집절차 및 일정	2
1. 모집절차	2
2. 모집일정	2
III. 신청자격 및 요건	3
1. 신청 가능한 업체	3
2. 신청 가능한 상품	3
3. 신청 불가(업체)	4
4. 신청 불가(상품)	4
IV. 신청서류 접수	5
1. 신청안내	5
2. 제출서류	5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6
4. 기타사항	7
V. 심사절차 및 결과발표	7
1. 심사절차	7
2. 결과발표	7
※ [붙임 1~9]	8

1. 목적 및 현황

1. 목적

- 품질 관련 정부공인인증 상품 및 3단계 심사를 통해 엄선된 상품만을 선정하여 우체국쇼핑 특산물 매장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우수하고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 모집을 통한 상품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기여

2. 현황

가. 우체국쇼핑 개요

-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을 발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편망을 통해 직거래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전국 3,450여개 우체국을 통해 중간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엄선된 특산물과 일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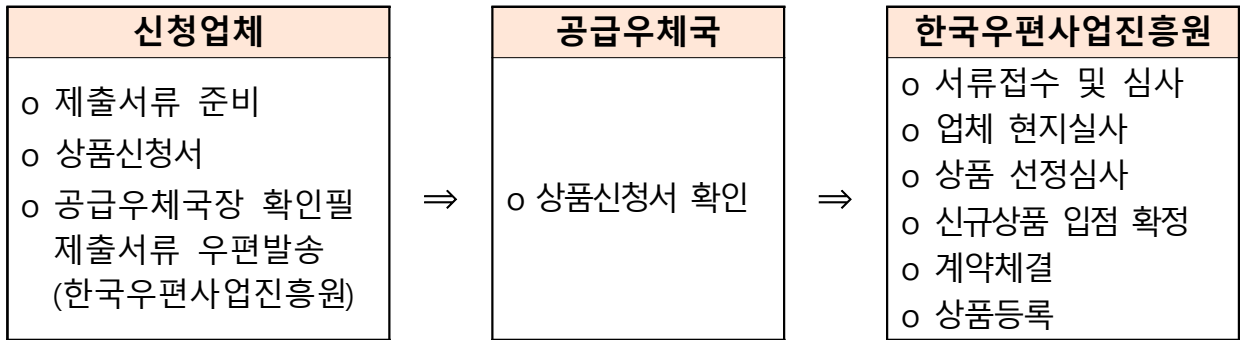
※ 도입배경 : 1986년 12월 농산물 수입개방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을 때,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공익적 우편서비스

나. 우체국쇼핑 특산물 서비스 현황

- 시행일: 1986년 12월 15일
- 서비스 상품: 국내산 1차 농수축산물 및 국내산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 판매수수료: 5.5% (부가세 별도)
- 기타 비용: 결제수단별 수수료 및 특산물 전용 포장박스 제작 비용 별도
 - ※ 연간 종합카탈로그 제작 시 희망 공급업체에 한해 제작비용 별도 발생함
- 배송방법: 우체국 등기소포 (공급우체국 지정 및 후납계약)
- 주요 특징
 - 우체국쇼핑몰 내 더 프리미엄 상품등록
 - 카탈로그 발행을 통한 상품 홍보 (전국 우체국 배포)
 - 특산물 전용 우체국쇼핑 친환경 외포장박스 사용
 - 정기적인 공급업체 현지방문 및 상품 품질검사 시행

II. 모집절차 및 일정

1. 모집절차



※ 공급업체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총괄업체국 또는 관내업체국으로 함

2. 2차 모집일정

업무내용	일정	비고
○ 모집공고	7.1.	- ePOST 및 POSA홈페이지 - 인터넷업체국, 언론 배포 등
○ 서류접수	7.1.~7.31.(31일)	- 7. 31.자 우편소인 유효
○ 서류심사	8.1.~8.9.(9일)	
○ 서류심사 결과 발표	8.13.	- 합격 : ePOST 및 POSA홈페이지 - 불합격 : 업체별 통보
○ 서류심사 결과 이의신청	8.13.~8.16.(4일)	- 유선 및 팩스 답변 / 조정
○ 현지실사	8.19.~8.30.(12일)	- 준비기간 포함
○ 상품심사 대상업체 안내	9.4.	- 개별안내(일반)
○ 상품건본 수합, 선정심사	9.23.~9.27.(5일)	- 일반상품 및 계절상품 포함
○ 선정심사 결과 발표	9.30.	- 합격 : ePOST 및 POSA홈페이지 - 불합격 : 업체별 문서통보
○ 공급업체 계약 체결	10.1	- 전자계약 및 계약서류 접수
○ 공급 개시	11.1.	- 포장박스 등 판매준비 완료 시

※ 결과 발표 및 공급 개시일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 가능한 업체

- 국내산 1차 농·수·축산물 및 국내산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3.6.30.까지) 경과한 사업자
- 품질관련 정부공인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 작업장, 보관용 창고(냉동, 냉장시설 등)를 확보하고, 인터넷 사용 환경이 구축된 사업자
- 벌꿀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한 공급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해당업체에 한함)

구분	행정처분기준		
처분 내용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시설 개수명령 처분된 업체	- 100만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영업허가 취소 처분된 업체	-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 및 미표시) 사유로 처분된 업체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1년 ('23.6.30. 이전 행정처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 신청	- 모집공고일 현재 3년 ('21.6.30. 이전 행정처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해 신청	- 신청 불가

2. 신청 가능한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가능 상품수: 동일분류 내 최대 20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 이후 상품 수 확대 가능, 기존 업체의 경우 기존 상품 수 포함 ◎ 계절상품: 사과, 배 등 8월 현지실사 시 원물확인이 가능한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감귤, 만감류 등 원물확인이 어려운 상품은 별도 심사 예정 ◎ 1업체 1분류 내 상품신청 가능(1차상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분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주

- 국내산 1차 농·수·축산물 및 국내산을 주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품질 관련 정부공인 인증을 획득한 상품
- 우체국 소포우편물로 취급 가능한 부피·중량(10kg 이하) 범위 내의 상품
- 관련기관으로부터 상품제조 허가나 신고를 필한 상품(가공식품에 한함)
- 공고일 현재 품목제조신고 후 1년 이상 생산실적 보유 상품(가공식품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주류제조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생산실적 보유 상품(전통주에 한함)
- 우육, 돈육, 벌꿀은 1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축산물 및 벌꿀에 한함)
 -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또는 도축검사 증명서, 벌꿀등급 확인서 제출

3. 신청 불가(업체)

- 수입산 원료 및 상품 취급업체 (타 거래처 납품 포함)
- 상품을 직접 생산(가공)하지 않고 구입 판매하는 유통업체
- 대기업 또는 20개 이상의 거래처(대리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체
- 과거 우체국쇼핑 입점업체 중 원산지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된 업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및 품목제조보고서 미신고 업체(가공식품에 한함)
-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신청 불가(상품)

가. 수입품 및 시장성·상품성 없는 상품

- 외국산 1차 농·수·축산물 및 외국산을 주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 단, 밀가루, 황태, 명태부산물, 참치액 등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
- 공인된 검사기준이 없거나 성분검증이 불가능한 상품[ex: 한봉(토종꿀)]
- 국민정서에 미흡하거나, 사치품 등 사용계층 한정 상품, 상품성이 미흡한 상품
- 상품 중량 10kg 초과 상품, 운송 중 파손 및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상품
- 생산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 생산자 명의로 신청한 상품(OEM제품)
※ 단, 1차 상품 생산자(원료 생산 또는 채취)가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운영하는 가공시설에 위탁 가공하는 때에만 신청 가능
-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상품

나. 식품으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상품

-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 식품, 과다복용에 따른 소비자 문제 야기 식품
※ 장뇌삼, 녹용원료, 아가리쿠스, 경옥고 등
- 건강보조식품 및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
※ 녹용, 곤충, 사슴액즙류, 붕어중탕, 용봉탕 등 동물성액즙류
- 환, 과립, 가루제품, 액즙류, 진액류, 생즙류 상품에 식품 첨가물이 혼합된 상품 (원재료 100% 상품구성만 가능)
※ 환 가루제품은 천연식품끼리의 혼합 허용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및 이를 원료로 한 상품
-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상품(예: 양치용 소금)
- 꿀벌을 키우는 과정에서 설당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하는 사양벌꿀

IV. 신청서류 접수

1. 신청안내

○ 신청서 내려받기

-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www.posa.or.kr)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시험주기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고, 접수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서류는 접수 불가

구분	제출서류	내용	해당업체	발급기관
1	상품신청서, 업체현황, 판매 가격산출서, 원료확보내역서	-붙임 1,2,3,4 작성	전업체	
2	원산지증명서	-붙임 5 작성	전업체	자체양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6 작성	전업체	자체양식
4	상품설명서	-상품 내용 및 특징 설명	전업체	
5	사업자등록증명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경과	전업체	관할 세무서
6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주류통신판매업신고증	전업체	각 시군구청
7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앞 6자리만 표시 (뒷자리 미포함)로 제출	전업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8	2023년도 납세사실증명원(과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면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업체	관할세무서
9	수질검사성적서	-상수도: 영수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전업체	상수도:시군구청 지하수:해당기관
10	품질인증서 사본 및 첨부서류	-국가공인인증(붙임 8 참조) -HACCP의무품목 인증 필수 -(해당) 잔류농약성적서 등 -(우육·돈육) 등급확인서(1등급 이상) -(벌꿀) 등급확인서(1등급이상, 탄소동위원소비 -22.5% 이하)	전업체	해당 기관
11	품질검사 성적서	-(가공)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농산) 잔류농약검사성적서 -(수산) 중금속검사성적서 -(축산) 미생물검사성적서 -(건기식) 광고심의필증 -(벌꿀) 시험.검사성적서	전업체	해당기관
12	생산자 확인가능 서류	-(농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등 -(수산) 어업인확인증, 중도매인증 등 -(축산) 축산업허가증 등	1차상품	각 시군구청
13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앞.뒷면 관할 행정기관의 원본대조확인필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생산실적보고서(1년 경과실적) -(벌꿀) 소분업신고증	가공상품	각 시군구청
14	품목제조신고대장 사본			
15	생산실적보고서 사본			
16	공장등록증 사본			
17	주류제조면허증 (민속주 또는 농민주 증명 가능서류)	-앞.뒷면 관할 행정기관의 원본대조확인필	주류	관할 세무서
18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붙임 7 참조)	해당업체	해당기관

※ 1차상품의 경우 생산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서류 신청 가능

○ 품질검사 성적서

- 서류 접수기간 중 시험의뢰접수증을 제출한 업체는 '24. 8. 9.까지 시험성적서 원본제출 시 접수유효 처리(기한 내 원본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식품유형 별 제출서류

1차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수산물) 중금속(납, 카드뮴) 검사성적서 (축산물) 미생물 검사성적서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벌꿀) 시험.검사성적서	(공통) 자가품질 검사성적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필증 (해당업체)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 (농산) 무농약, 유기농 인증상품 :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제출 - (축산) 유기/무항생제 인증상품 : 잔류물질 검사성적서 제출 - 세트상품: 전 신청상품(구성된 상품별)에 대한 각각 성적서 제출	

○ 품질인증 관련서류(해당기관)

친환경품질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인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통식품(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GA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전통주 품질인증(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기관), 이력추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전통식품명인(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벌꿀등급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양봉협회), 원산지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저탄소인증(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4. 7. 1.(월) ~ 7. 31.(수), 31일간(7. 31.자 우편소인 유효)
- 접수방법: 상품신청서에 공급우체국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제출처: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3 POSA빌딩 6층(우편번호 07245)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쇼핑실 상품관리팀
- 문의전화: (02) 2036-0672, 0673, 0676, 0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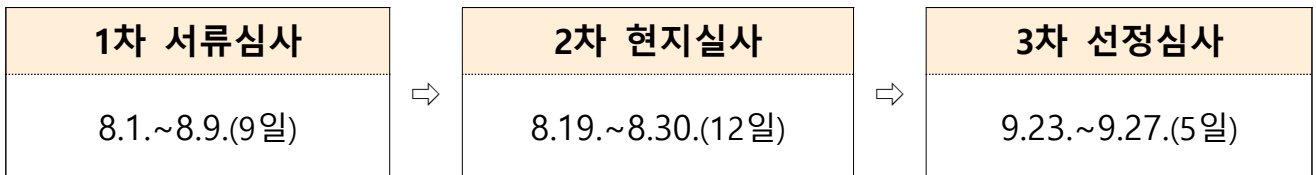
4.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시험주기 안에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하고, 접수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 및 상품 견본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일부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 입점 후 정기 품질검사(관능검사, 성분검사) 및 현지점검 시행
- 입점 시 우체국쇼핑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및 규격의 친환경 외포장 박스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해야함(냉동·냉장상품의 경우 친환경 보냉제 사용 의무 포함)

V. 심사절차 및 결과발표

1. 심사절차

- 3단계 심사



2. 결과발표

- 합 격: 우체국쇼핑 홈페이지(mall.epost.kr)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www.posa.or.kr)
- 불합격: 업체별 개별 안내

(붙임 2)

업 체 현 황

작성일자 : 2024년 월 일

사 업 현 황	상호(법인명)					
	대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업태			업종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FAX		
타 거 래 처	통신판매					
	일반판매					
시 설 현 황	주소	본사			전화	
		공장			전화	
현 황	직원 현황	본사: 명, 생산시설: 명				
		인터넷사용 가능자: 명				
		민원처리 담당자: 명				
사무 환경	컴퓨터: 대, 프린터: 대, 인터넷 사용:유(), 무()					
시설 환경	원료보관실:유(), 무(), 생산시설:유(), 무(), 완제품보관실:유(), 무()					
매출액(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기타 업체 현황						
(양식외 기록할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 업체 전경 및 생산시설 사진 첨부

(붙임 3)

판매가격 산출서

※ 판매가격 산출방법

상품명	내용 및 규격	상 품 공급가	배송비 (소포요금)	합 계	부가세	우체국쇼핑 판매가격
000	감귤 5Kg (13 ~ 14과)	①	②	③ (①+②)	④ (③×10%)	③+④
<p>※ 가격 산출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송비(소포요금)의 경우 공급우체국을 통해 소포요금 확인 후 작성 (붙임 9. 11번 항목 참조) - 면세상품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여 판매가격 산출 - 우체국쇼핑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의 5.5%(부가세별도)이며, 결제수수료 별도 발생함 						

순번	상품명	내용 및 규격	상 품 공급가	배송비 (소포요금)	합 계	부가세	우체국쇼핑 판매가격

상기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원료 확보 내역서

업체명				대표자		
상품명				분 류	농산,수산,축산,가공식품,전통주	
구분	원료명	① 원료확보방법	② 수 량	③ 증빙서류	④ 비 고	
주 재 료						
부 재 료						

1) 신청상품별로 작성

2) 항목별 기재사항

① 원료확보방법 : 자가생산, 수매(수매지역) 등 원료확보방법을 기록

② 수량 : 톤, kg 등으로 표기

③ 증빙서류(증빙서류 유효기간 : 최근 1년 이내 서류 중 일부제출)

- 1차농산물(비가공)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제목을 기록하고 사본을 첨부

※ 관련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인정

- 가공식품 및 수산물 : 중도매인 자격증 및 수매영수증 등 원료구매 증빙서류의 제목을 기록하고 사본을 첨부

④ 비고 : 확보된 원료로 우체국쇼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수량 (상품별로 표기)

3)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료명 전부 기재

본인은 국내산 원료확보 및 사용 준수에 있어서 위 사항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5)

원산지 증명서

상품명(원료명)			
생산자 인적사항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원산지			
생산년도			
수량		kg	

※ 원산지증명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되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증명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붙임의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상품(원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며, 만약 기재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 특산물 상품 접수 및 운영에 따른 신청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신청자의 기본권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 항목	이용 목적
개인정보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등	우체국쇼핑 특산물 상품 접수 및 운영 관련
<u>고유식별</u> <u>정보</u>	<u>주민등록번호</u>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신청자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표시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의한다'란에 표시하고 서명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취급위탁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출일로부터 상품심사 종료일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단, 상품심사에 합격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 종료일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한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한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7)

자가품질검사기준 및 영양표시, HACCP 의무적용 대상

※자가품질검사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No	주기	식품유형
1	1회 / 6개월	주류
2	1회 / 3개월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	1회 / 2개월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4	1회 / 1개월	참기름,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채종유, 유채유,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추출참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 식물성유지, 시리얼류, 효소식품, 찌쌀,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로열젤리류,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어육가공품, 햄,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식육함유가공품은 제외한다.), 알가공품, 유가공품, 식초, 소스류, 카레, 생식류, 특수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영양표시 대상 식품 유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영양표시)

(현행)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면류, 음료류(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시리얼류, 유가공품 중 우유류·가공우유·발효우유·분유류·치즈류,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건강기능식품 (추가)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유바, 가공두부), 목류, 식물성크림, 액상차, 발효식초,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소스, 카레, 향신료조제식품, 김치속, 배추김치,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당절임, 조림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 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 추가된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2022년 1월 1일 시행)

*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하거나 수입하는 식품(2024년 1월 1일 시행)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유형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현행)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전체 생산식품 (추가)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 추가 유형의 경우 단계별 시행

- 1단계('14.12) : 2013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16.12) : 2013년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 3단계('18.12) :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 4단계('20.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1년 유예 후 '21.12.1. 시행)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도축업, 집유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업의 경우 단계별 시행

- 1단계('18.12) :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 2단계('20.12) : 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3단계('22.12) : 20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
- 4단계('24.12)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붙임 8)

품질관련 정부공인인증

품질인증의 경우 민간인증을 제외한 정부공인인증만 인정

※인증서류 명의 적용 범위는 개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법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및 법인 상호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하기 인증 외 정부기관 인증 모두 가능(지자체, 민간 인증 제외)

친환경 인증



구분	농산물			
마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분	수산물				
마크					
인증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구분	축산물		구분	농축산물
마크			마크	
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산지 인증

구분	원산지 인증	
마크		
인증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 95% 이상 국산)	농산물품질관리원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 100% 국산)

구분	원산지 인증	
마크		
인증기관	수산물품질관리원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 95% 이상 국산)	수산물품질관리원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 100% 국산)

품질 인증

구분	품질인증
마크	
인증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우수천일염 인증

구분	우수천일염인증
마크	
인증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구분	전통식품인증	
마크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GAP

구분	우수농산물인증
마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

구분	HACCP	
마크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도축장, 집유장, 농장 외)	농림축산식품부(도축장, 집유장, 농장)

지리적표시

구분	지리적표시제	
마크		
인증기관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전통주 품질인증

구분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		
인증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기관 (가형 : 품질인증)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기관 (나형 : 품질인증 및 100% 국내산)

이력추적

구분	농산물이력추적	수산물이력추적
마크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식품명인

구분	식품명인 지정	식품명인 지정
마크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붙임 9)

우체국쇼핑 신규상품 접수 Q & A

1. Q : 2024년 2차 신규상품 접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 2024년 신규상품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2. Q : 신규상품 접수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및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페이지(www.posa.or.kr)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Q : 공산품도 가능한가요?

A : 공산품은 우체국쇼핑몰 내 생활마트 및 B2B로 입점이 상시 가능하므로, 우체국쇼핑몰 내 입점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Q : 상품신청서의 공급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 공급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시, 군, 구)내 우체국으로 해야 하며 우체국과 거리가 가깝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공급우체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5. Q : 사무실과 생산시설 위치가 다른 경우 어느 지역에 신청해야 하나요?

A :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확인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6. Q :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한가요?

A : 신규상품 서류심사, 현지실사, 선정심사를 마치고 합격한 상품은 계약체결 후 우체국쇼핑 포장박스 및 상품등록이 완료되면, 11월 이후부터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7. Q : 우체국쇼핑 상품판매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 판매수수료는 기준 판매가의 5.5%(부가세별도), 결제수수료는 결제수단별로 상이하며, 판매대금 정산시 차감됩니다.
또한, 연간 카탈로그 및 특선집 등 홍보물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수수료가 발생하며, 우체국쇼핑에서 제공하는 규격의 포장박스 제작 및 기표지 출력을 위한 전용프린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8. Q : 생산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 1차 상품의 경우 생산자와 대표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공품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Q : 우체국쇼핑에 신청한 상품은 모두 국산원료인데 업체에서 타 거래처에 납품하는 상품에는 수입산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 동일품목의 경우 타거래처 공급상품의 수입산 원료 사용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10. Q : 자가생산의 증빙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 1차 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공식품은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1차 수산물은 어업인 허가증, 중도매인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11. Q : 원가계산서의 소포요금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 소포요금은 상품을 발송할 상태로 완전 포장되었을 때의 중량과 부피(가로+세로+높이 길이의 합계)를 측정한 후에 공급우체국에서 청구소포요금을 확인하여 타 지역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12. Q : 시험성적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받나요?

A : 시험성적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정한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비가공품 중 농산품은 잔류농약검사, 수산품은 중금속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식품위생 검사기관 현황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Q :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나요?

A : 시험성적서는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험의뢰중인 경우 접수증을 접수기간 내 접수 후 8월 9일 까지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4. Q : 신청한 상품이 계절상품으로 상품이 없어 시험성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2024년 신규모집부터 계절상품은 실제 원물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감귤류, 만감류 등 원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한 내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험성적서 제출예정일 표시)

15. Q : 공장등록증은 꼭 필요한가요?

A : 공장시설이 필요한 상품을 신청한 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경우는 공장시설과 같은 용도이어야 합니다.

16. Q : 신청상품의 규격은 자유롭게 신청해도 되나요?

A : 품목별 규격표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량, 개수 등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품 목	규격표준화 내용	적 용 방 법	비 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급 표시	중량 및 등급 표시 (Okg, O등급)	1등급 이상										
계란	구 표시	구 표시											
감귤	크기구분 표시	중량 및 크기구분 표시											
고구마	상품별 중량	중량 및 상품별 중량 표시 (Okg, 개당 Og ~ Og)											
수삼, 더덕	뿌리 표시	중량 및 뿌리 표시 (Okg, O ~ O뿌리)											
사과	과수 범위	중량 및 과수표시 (개수범위 2~4과 이내)											
배	과수 범위	중량 및 과수표시 (개수범위 2~4과 이내)											
곶감	개수 범위	중량 및 개수표시 (개수범위 5개 이내)											
굴비	길이 표시	중량 및 개수, 길이 표시 (Okg, O미, Ocm이상)	15cm 이상										
옥돔	마리수 표시	중량 및 마리수 (Okg, O미)											
조미구이김	매수 표시	매수, 봉수 (O매, Ob봉)											
멸치	크기기준 표시	중량 및 크기기준 표시 (예. 대멸 1kg)	크기기준 5단계 <table border="1"> <tr><td>대멸</td><td>77mm 이상/마리</td></tr> <tr><td>중멸</td><td>51mm 이상/마리</td></tr> <tr><td>소멸</td><td>31mm 이상/마리</td></tr> <tr><td>자멸</td><td>16mm 이상/마리</td></tr> <tr><td>세멸</td><td>16mm 미만/마리</td></tr> </table>	대멸	77mm 이상/마리	중멸	51mm 이상/마리	소멸	31mm 이상/마리	자멸	16mm 이상/마리	세멸	16mm 미만/마리
대멸	77mm 이상/마리												
중멸	51mm 이상/마리												
소멸	31mm 이상/마리												
자멸	16mm 이상/마리												
세멸	16mm 미만/마리												
황태	마리수 표시	중량 및 마리수 표시 Og x O미											
전복	마리수 범위	중량 및 마리수 표시 (마리수 범위 2미 이내)											
임산물, 꿀, 건해산물, 쌀	중량 표시	중량 표시											

(붙임 10)

계절상품 예시

품 목	확인 사항	비 고
사과	현지실사 기간 원물 확인 가능 품목 (2024. 10. ~ 2025. 1.)	
레몬		
배		
만감류		
참다래		
곶감		
대추		
기타		